

1. 개정이유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안 제2조)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한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2) 아동의 기본정보, 양육환경, 입양동의여부, 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등을 포함하여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나. 입양의 동의 및 승낙(안 제3조)

법 제7조제1항1호에 따른 아동의 입양 동의 및 승낙, 친생부모의 동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법 제7조제2항2호에 따른 아동의 입양 동의, 친생부모의 동의, 동의·승낙의 철회에 관한 서식을 마련

다.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의 작성 송부(안 제4조)

-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복지부

- 2) 입양아동의 기본정보, 양부모 국적, 국적취득일 등이 기재된 문서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아동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의를사를 신고한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사. 입양의 신청(안 제8조)

- 1) 법 제20조에서 아동의 국내로의 입양 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방법,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확인을 위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에 관한 방법 등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양부모의 자격 중 범죄경력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토록 규정함
- 3) 양부모가 되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방문·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둠
-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양부모 보고서를 출신국에 송부

아. 국내로의 입양에서 사후서비스(안 제10조)

- 1) 법 제24조에서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 적응을 위하여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장관은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함에 따라 작성·송부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

2)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에는 결연된 아동과 양부모의 정보, 결연을 심의·의결한 기관 및 일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통해 입양국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입양 절차의 중단 사정(안 제5조 및 제9조)

- 1) 법 제11조제5항(외국으로의 입양) 및 제21조제2항(국내로의 입양)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아동 복리를 위해 입양절차를 중단할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2) 천재지변, 전지사변 등, 양자가 될 아동의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외국으로 또는 국내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입양절차의 중단 사유로 규정

마. 국외에서의 아동 인도(안 제6조)

-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인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2)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정으로 규정

바. 외국으로의 입양에서 사후서비스(안 제7조)

-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 탈소를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할 내용 등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2) 양부모와 양자에게 보고서 작성의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도록 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의 정보 입력·관리 등(안 제11조)

법 제27조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함

차.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안 제12조)

- 1) 법 제30조제2항에서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입양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구체적 내용,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법원 입양허가서를 확인한 후 서식에서 정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양부모와 양자에게 발급하며, 양부모와 양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입양아동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기본정보 및 현재 양육환경
2. 입양에 대한 아동, 친생부모 등의 동의 여부
3. 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조(입양의 승낙 및 동의)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철회는 법 제8조에 따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 및 철회는 법 제8조에 따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다.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동의·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송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결연된 아동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정보
2. 제1호의 결연을 심의·의결한 기관 및 일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국 중앙당국에 국제입양절차진행협의서를 작성, 송부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입양국에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양자가 될 아동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외국으로의 입양에서 사후서비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사실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양된 사람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2. 양부모의 국적
3. 국적 취득일

제8조(입양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양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자격 중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신청 서류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그 밖의 상담 등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환경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담당자는 신청인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방문·조사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 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입양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민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양자가 될 아동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정

제10조(국내로의 입양에서 사후서비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출민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부모와 양자에게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호적응 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의 정보 입력·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1. 외국으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
 -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및 국제입양 아동보고서
 - 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
 - 라. 법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
 - 마.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바. 법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정보
 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 및 국제입양 절차 진행 협의서

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정보
 자.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

카.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 통보에 관한 정보

타. 법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2. 국내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정보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 보고서

라.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
 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바. 법 제25조에 따른 입양 취소에 관한 정보

3. 외국으로의 입양과 국내로의 입양에 공통되는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나. 법 제2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라.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

마.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각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법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에 관한 정보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 보고서

4.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부모가 된 사람 또는 양자가 된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 서식의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양자가 되려는 아동의 국제입양 승낙서

아동의 국제입양 승낙서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아동)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함				
양자가 될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본국 출생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본국 출생등록번호)		
동의자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본국 출생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국제입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은 입양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아동 성명 (서명 또는 인)				
☞ 이 부분은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법정대리인인 친생부모의 동의·승낙 거부나 불응 시 그 사유(「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1.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해입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5. 그 밖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				
첨부 서류	1.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친생부모의 국제입양 동의서

친생부모 국제입양 동의서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아동)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함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친생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본국 출생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본국 출생등록번호)		
동의자 (친생모)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본국 출생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본인은 친생부모로서 위 아동의 국제입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부(父)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자 모(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법정대리인인 친생부모의 동의거부·불응 시 그 당사자 및 사유(「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				
1. 친생부[]/친생모[]가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친생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친생부[]/친생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친생부[]/친생모[]가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첨부 서류	1.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국제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국제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아동)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본국 출생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아동 본인일 경우 본인 기재)	
철회사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본인은 국제입양에 대한 동의(승낙)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승낙) 철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입양신청서

입양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입양유형 및 효력	입양유형 [] 국내로의 국제입양(전혼자녀) 입양효력 [] 양자 [] 친양자						
양 부 모 가 될 사 람	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본국 출생등록번호)				
		주소(실거주지)	전화번호				
		성별	민족 배경				
		직업	연수입	보유 국적			
	모	사용언어	가능 언어(수준)	종교	학력		
		성명	생년월일				
		주소(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본국 출생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민족 배경				
직업	연수입	보유 국적					
	사용언어	가능 언어(수준)	종교	학력			
혼인 상태	[] 미혼 [] 기혼 혼인기간						
재산 (합산)	주택	종류([]자가 []전세 []월세), 대지	m ² , 건물	m ²			
	부동산	만원	등산	만원	부채	만원	
가족 및 동거인	성명	성별	관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 동거
	성명	성별	관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 동거
	성명	성별	관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 동거
	성명	성별	관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 동거
과거 입양여부	횟수	유형	[] 국내 [] 국제	입양허가일			
		유형	[] 국내 [] 국제	입양허가일			

[별지 제5호 서식] 협약준수입양증명서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양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실거주지		
	등록기준지		
양부모	성명	생년월일	관계
	실거주지		
	등록기준지		
	성명	생년월일	관계
입양 정보	출신국	출신국 명	중앙당국 명
		중앙당국 주소	국제입양철차진행 협의일
	입양국	입양국 명	중앙당국 명
		중앙당국 주소	국제입양철차진행 협의일
	입양 허가	허가국 명	허가기관명
	허가일	입양효력(양자 또는 친양자)	

위의 국제입양은 해당 출신국 및 입양국의 중앙당국에 의해 해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하여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아동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본국 출생등록번호)				
	성별	주소(등록기준지)				
	보유 국적	주소(실거주지)				
	사용언어	가능 언어(수준)	종교			
	현 양육자	양육기간	형제·자매 비동거 사유(해당시)			
	가족사항					
	성명	성별	관계	생년월일	학력	[] 동거
	성명	성별	관계	생년월일	학력	[] 동거
	성명	성별	관계	생년월일	학력	[] 동거

* '아동정보' 는 양자가 될 아동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아동의 친권자	성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보유 국적				
	주소(등록기준지)	주소(실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입양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 확인불가	확인 불가 사유(사망 등)		

* '아동의 친권자' 는 양자가 될 아동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3.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입양신청 체크리스트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신청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신청인	성명	구분 ☐ 입양인 ☐ 양부모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또는 이메일)
	우편주소	

입양 인정	양 자	성명(입양 후)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양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양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입양허가기관			허가일자		

171 172 173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입양 허가서	수수료 없음
------	---	-----------

- 21 -